

(주)대우인터내셔널 기업지배구조헌장

(The Corporate Governance Charter for 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

前 文

우리는 ‘창조·도전·신뢰’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항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World Best Global Trading & Investment Company를 지향한다.

우리는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Vision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

우리의 경영 의사결정은 이 헌장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독립적인 이사회와 전문경영진에 의한 책임경영, 고객과 주주를 중시하는 가치경영, 그리고 투명경영과 나눔경영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I. 株主의 權利

1.1 주주의 권리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회사 이익분배 참여권, 주주총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및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 상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회사는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들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 및 진행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회사는 특정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다른 주주들을 보호하며, 필요한 정보를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모든 주주에 대해 공평하게 이를 제공한다.

II. 理事會

2.1 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기능을 성실히 수행한다.

2.2 이사회 구성 및 운영

회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2.3 이사의 자격 및 책임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 그리고 이해 관계자 의 균형적인 이익을 대변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사 의 경영상 의사결정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에 헌신적인 태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의무를 다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시 지득한 회사 의 제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 또는 제 3자 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이사의 선임

이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한 절차를 통해 다양한 주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회사는 주주총회일 이전에 이사후보를 공시하여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2.5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한다.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충분하고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6 이사회 내 위원회

이사회는 그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법령, 회사의 정관 및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7 윤리와 이해의 상충

이사회는 회사의 구성원은 물론 이사들도 언제나 윤리적으로 행동하도록 권고하며, 회사의 「윤리강령」, 「윤리규정」 및 「윤리경영실천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행동준칙의 준수를 감독한다.

이사회는 어떠한 이어나 집행임원에 대해서도 윤리규정의 준수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며, 만일 어떠한 이어나 집행임원에게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모든 이사는 자신의 개인적, 영업적 또는 직업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에는 스스로 참석하지 않는다.

III. 監査機構

3.1 감사위원회

회사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며,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그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하여 회사의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관계법령, 회사의 정관 및 사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회사는 그 직무수행의 독립성에 대한 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한다.

3.2 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 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IV. 利害關係者

회사는 주주, 임직원, 거래선, 채권자 및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을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의 증대에 기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노력한다.

V. 公 示

회사는 관계법령, 회사의 정관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공시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회사 정보의 공개범위나 공개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